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41144] [www.온누리쭈꾸미.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4.11.2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12.29.]

온누리쭈꾸미

정보공개서

[(주)온누리푸드시스템]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온누리푸드시스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2길 74]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1670-010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31-713-5293]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본부, 1670-0100]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식회사 온누리푸드 시스템	온누리쭈꾸미 외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2길 74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7.03.30	2007.04.01	송경용	031-366-5240	031-713-5293
	법인등록번호	120111-0430059	사업자등록번호	131-86-0184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과 관련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이사	송경용	온누리쭈꾸미 외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2길 7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경용	031-366-5240	031-713-5293
사내이사	강계숙	온누리쭈꾸미 외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2길 7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경용	031-366-5240	031-713-5293
감사	김순태	온누리쭈꾸미 외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2길 7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경용	031-366-5240	031-713-529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 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온누리 푸드투어	온누리 장작구이/ 온누리농장	2014.05.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00 미켈란쉐르빌상가동 403호	허인행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온누리쭈꾸미]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온누리쭈꾸미	
상 호	온누리쭈꾸미 OO점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4009510570000 (2013.01.29.)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그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25,388,553	4,530,491	20,858,062	8,682,380	-233,497	3,295,797
2023년	24,412,739	3,255,265	21,157,473	10,610,776	97,126	299,411
2024년	19,587,733	630,893	18,956,839	9,974,688	642,620	799,366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송경용	대표이사	2020.3 ~ 현재	(주)온누리푸드시스템 대표	
	강계숙	사내이사	2013.11 ~ 2020.3	(주)온누리푸드시스템 대표	경영
			2020.3 ~ 현재	(주)온누리푸드시스템 이사	관리
	김순태	감사	2014.03 ~ 현재	(주)온누리푸드시스템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1	1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온누리 푸드시스템	가맹사업 경영	2014.07 ~ 현재	온누리장작구이 (등록 20090100232) 가맹사업 기타외식업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등록자	등록만료일 (가맹본부 사용기간)
상표 (서비스표)	29류	2013.01.29	4009510570000	(주)온누리 푸드시스템	2033.01.29.

○ 당사의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얻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4년 10월 3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4년 5월 14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577-4 / 032-525-6692

2. [온누리쭈꾸미]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온누리 푸드시스템	온누리 쭈꾸미	강계숙	2014.10.31.~2020.03.3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2길 74
(주)온누리 푸드시스템	온누리 쭈꾸미	송경용	2020.03.31. ~ 현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2길 74

3. [온누리쭈꾸미] 업종

영업표지	업종	
온누리쭈꾸미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쭈꾸미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온누리쭈꾸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2	1	3	2	1	3	2	1
서울	1	1	-	1	1	-	1	1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1	-	1	1	-	1	1	-	1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1	1	-	1	1	-	1	1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온누리쭈꾸미]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증감
2022	2	-	-	-	-	2	0
2023	2	-	-	-	-	2	0
2024	2	-	-	-	-	2	0

6. [온누리쭈꾸미]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온누리푸 드시스템	온누리 장작구이	20090100232	기타외식	9/0	9/0	9/0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평균 매출액(단위:천원, VAT 미포함)						비 고
		매출액		상한		하한		
		매출액	3.3㎡당	매출액	3.3㎡당	매출액	3.3㎡당	
전체	2	504,443	29,994	699,999	33,478	308,887	24,270	2곳 산정 5곳 미만
서울	1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1							5곳 미만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2	3,564일(9년 9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온누리쭈꾸미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온누리장작구이/온누리쭈꾸미 통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기준: 2024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49,088	(비공개)	-	(비공개)
광고비		(비공개)	49,088	(비공개)	-	-
판촉비		(비공개)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분당정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5-2	031-718-7503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은행지점 방문 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뱅킹 이용 시	① 인터넷뱅킹(www.kbstar.com)접속 → ② 기업서비스 → ③ 가맹금예치제도 클릭 → ④ 가맹점사업자 클릭 → ⑤ 가맹금 예치 클릭 ⑥ 가맹본부 사업자번호 입력 → ⑦ 온누리쭈꾸미 선택 → ⑧ 가맹예치금 이체	

○ 「가맹금예치금」 예치내역 조회 : 가맹점사업자가 인터넷뱅킹으로 본인이 예치한 가맹금예치금 내용 확인 가능

▶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온누리쭈꾸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가맹비	11,000	계약체결 즉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영업개시 후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5,500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교육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교육개시 후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가맹비의 구성 : 가입대가(20%), 영업표지 사용 부여의 대가(30%), 노하우제공의 대가(20%), 개업지원의 대가(20%), 기타 자료제공의 대가(1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	----	-------	--------------	----

총계	5,000			
계약이행보증금	5,000	계약체결 시	금전지급의무위반, 손해배상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귀하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총계	[21,500]
가맹비	11,0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지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165㎡(5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당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82,500	3,650			
인테리어	협력업체	88,000	1,760	계약시 40%, 중도금 40%, 설치 완료시 20%	공사 시작 전 계약취소	176만원(3.3㎡당)
주방기기	협력업체	44,000	880	계약시 40%, 중도금 40%, 설치 완료시 20%		
주방집기	협력업체	23,000	460	계약시 40%, 중도금 40%, 설치 완료시 20%		
간판	협력업체	7,700	154	계약시 40%, 중도금 40%, 설치 완료시 20%		
의/탁자	협력업체	11,000	220	계약시 40%, 중도금 40%, 설치 완료시 20%		
초도물품	본사	8,800	176	교육시작 전 100% 입금		
					공급전 계약 취소	테이블17개 기준
						상권 또는 매장 평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 표의 금액은 3.3㎡(평)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규모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스공사, 전기증설, 소방검열 별도, 전화, 냉난방, 철거비용 및 샷시, 화장실 등 기타 지원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및 사항은 별도로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정하는 매뉴얼 및설계 도면에 따라 설계 시공하여야 합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당 금이십이만원(₩ 220,000 VAT포함)을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지정 → 가맹희망자 직접조사 또는 가맹희망자가 전문업체에 의뢰 → 당사 및 가맹희망자가 동의 시 확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사업자	기본적인 매뉴얼 숙지 가능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기본적인 매뉴얼 숙지 가능자	만18세 이상일 것(미성년자 제외)

- 6)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온누리쭈꾸미]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일회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및 범위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330	매월 10일	미반환	
전산관리비	가맹본부	33	매월 10일	미반환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각 가맹점별 매출액/총 가맹점 매출액	광고전 (별도공지)	광고 집행전 광고분담금 중 일부 또는 전부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실시 10일 이전	교육실시 전	교육실시 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협의하여 결정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변경 전	간판을 변경한 후에는 반환 불가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협의하여 결정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전	교체·보수한 후에는 반환 불가
점포 환경 개선 비용	가맹본부	본사 부담외 금액	-	-	VII.-1.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연24%	-	-	가맹계약서 39조 참조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다른 간판변경비용은 가맹점의 규모, 간판의 재질, 변경사유, 당사자의 귀책사유, 계약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는 귀하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로열티, 전산관리비는 월 단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당사는 가맹점 매출액 파악이 합리적이지 않아 차액가맹금 현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온누리쭈꾸미 가맹점 운영을 점검하고 가맹계약서 및 영업규정을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고객관리, 메뉴관리, 재고관리 등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온누리쭈꾸미]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에 양수인은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이 당사와 신규가맹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개점에 필요한 교육 등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 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양수자에게 시설의 노후나 내부 매뉴얼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당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 40조(계약의 종료와 조치)

1. "갑"이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개발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간판 변경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을"은 종료 후 3일 이내 지체 없이 "갑"의 상호, 간판, 상표, 등 영업 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갑"이 제공한 전산 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 기간에 대하여 지체 1일(日)당 일금삼십만원(₩3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을"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을"이 부담하고 "갑"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5. "갑"은 가맹 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갑"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① "갑"이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을"과의 계약승계 여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 사업자는 남은 가맹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가맹 계약 후 연장 재계약 이 된 경우에는 반환될 수 없다.

② "갑"이 해당 가맹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갑"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을"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을"이 계약종료 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 범위내(50%)에서 반품이 가능 하나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나) 당사가 정한 필수 공급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2024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거래액의 %)	금액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4년 기준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거래액의 %)	금액	비고
해당없음	-	-	-	-	-
계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별지3]에서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별지3]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지3]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주방설비 및 집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는 거래상대방에 따른 판매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지4 참조		매장별 별도공지	2014.10월 기준

○ 귀하가 [별지4]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보호 제도 유무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동일한 업종의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쭈꾸미를 주메뉴로 하여 판매하는 업종	온누리쭈꾸미	-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해당 브랜드와 상기 기재된 범위와 같은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상기와 같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상의 동 단위	가맹계약서 별첨1 표시

3) 가맹 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 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 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	--------	-----------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 인구 또는 유동 인구가 현저히 변동 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 변화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 되는 경우 4. 위에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동이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영업지역 밖에 고객에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관련 계약조항
1. "을"은 "갑"과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을"이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 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갑"이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 ② 영업 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③ 특정 가맹점 사업자가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과 "갑"의 가맹 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 배상 청구	가맹계약서 13조 6항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²⁾
2024	51%	49%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온누리꾸미]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 38조 2항 각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 38조 2항 각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 38조 2항 각호
○ 가맹사업의 브랜드 보호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판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 38조 2항 각호
○ [온누리꾸꾸미]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이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 38조 2항 각호
○ 당사에서 귀하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관련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 38조 2항 각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은 "갑"의 지적 재산권에 해당되는 모든 매뉴얼과 조리 및 판매 활동과 기법, 기술, know-how등을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제 7조 5항
○ "을"이 "갑"의 가맹사업 운영 및 이미지를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각종 해산물 및 육류, 소스류 등을 타 업체에서 구입하거나, 임의로 구입, 제조하는 경우 등으로 "갑"의 상표 및 타 가맹점 명예 또는 상품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만약, 이를 위반 했을 시 1회 구두경고, 2회 서면시정 요구, 3회 이상일 경우 계약 해지의 조치를 취한다.	제 7조 7항
○ "갑"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거나 상호 합의된 품목을 판매기피 할 때	제 7조 8항
○ "을"과 그의 직원이 "갑"의 영업 기밀을 누설하여 "갑"이 현저한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갑"에게 허위사실을 통보한 경우.	제 7조 11항
○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제 7조 13항

○ "을" 은 공급받은 원.부재료 등을 "갑"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 29조 14항
○ 제7조 "을"의 준수사항 및 제23조 "갑"의 경영지도에 있어서 1차 시정, 2차 재시정의 서면을 받고도 시정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 37조 2항
○ "을"은 어떠한 이유로든 "갑"의 영업상 기밀을 공개하거나 타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 41조 1항
○ "을"은 계약의 존속 중에 "갑"의 아이템이나 메뉴 등과 관련된 것으로 "갑"의 허락 없이 노하우 전수 및 경업 할 수 없으며 또한 본인 및 동업자나 제3자로 하여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제 42조 1항
○ "을" 은 제 3자에게 본 계약상의 가맹점 그리고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 전대, 위탁 경영, 담보 제공등을 할 수 없다.	제 43조 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39조 제2항)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

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1개월 전에 당사에 계약해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의 종료시까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정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쌍방의 서면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자는 당사 가맹계약서에 필히 계약을 하여야 하며 규정된 교육(교육비부담)을 이수 하여야 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본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7일 가량 소요) →승인 여부 통지→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3일 소요)→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1670-0100)

○ 단, 양도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통지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양도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계약이행보증금과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양수자에게 시설의 노후나 내부 매뉴얼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대리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 서면으로 신청→본사 담당팀 검토(7일 가량소요)→승인여부 통지→본사, 상속인계약체결(3일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능	-	-	-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온누리쭈꾸미]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쭈꾸미나 낙지등의 해산물 요리를 판매하는 업종 ○ 쭈꾸미 등 당사가 취급하는 메뉴와 동일한 형태의 메뉴를 판매하는 업종 ○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당사 (1670-010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온누리쭈꾸미]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 ~ 22:00	월 26일 이상	문의 : 당사 (1670-0100)

○ 가맹사업자는 1월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매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0명	가맹사업자 선택	가맹사업자 지정자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의 업무를 당사를 대신하

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관할하는 지사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위생	가맹본부 위생점검 방문→청결도 확인→관리지도→가맹사업자 확인 및 서명→평가표작성→불량가맹점 공지→수정요청→완료	비정기적 (연 1~2회)	가맹본부	식품위생기준에 의한 평가
매장 순회	담당자 매장방문→서비스, 품질, 위생, 시설 및 본사 관련 기본 계약사항 이행여부 확인)→각종 행사 및 매출 증진 방안 논의	월/분기별 1회		매장 배포 매뉴얼에 의한 평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방문→품질확인→관리지도→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평가표 작성→불량가맹점 공지→수정요청→완료	비정기적 (연 1~2회)		
서비스 관리	서비스 평가→관리지도→불량가맹점 공지→수정요청 → 완료	비정기적 (연 1~2회)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온누리꾸미]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광고	상품광고	30%	70%	광고계획공고→ 가맹점의 광고 참여 여부 결정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50%	50%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개별행사	가맹점 전액 부담		해당없음	월별 판촉행사	

- 판촉의 경우, 기획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판촉물 구입비용은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전국단위 광고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광고일
-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 당사의 계획, 주관하는 이동통신 제휴, 신용카드 제휴 등과 같은 각종 제휴 행사진행 시 귀하에게 공지하여야 하고, 귀하는 이에 협조하여 참여 하여야 합니다. 단, 참여의사가 없을 시 귀하는 당사에게 사전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업체 제휴 행사진행 시 제휴 업체와 당사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협의 절차
광고	광고안 본사 서면 제출 → 광고안 본사 검토 (7일) → 수정 및 승인여부 결정 통보 (7일)
판촉	판촉안 본사 서면 제출 → 판촉안 본사 검토 (7일) → 수정 및 승인여부 결정 통보 (7일)

1. 광고, 판촉 시 제출서류 : 광고, 판촉 목적 및 내용, 제작물 이미지
2. 사전 점검사항 : 로고 및 상표 사용, 광고 판촉 지역, 현진행중인 행사와의 중복 관계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 3년간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귀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규정
개점 전 "을"이 일방적 변심에 의하여 해지, 중단,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일 후 3일 이내의 경우 예치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3일 이후에는 1일(日)당 일금 이십만원을 추가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21조 4항
"갑"의 원.부재료 공급 품목과 지정 품목을 "갑" 또는 "갑"이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을 시에는 공급받았더라면 지불하였을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29조 2항
제 40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 기간에 대하여 지체 1일(日)당 일금삼십만원(₩300,000원, VAT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40조 2항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2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 기간 내 아래 42조 1항의(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일금오천만원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41조 5항
"갑"이나 "을"어느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금 일천만원(₩10,000,0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 45조 1항
본 계약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 "을" 이 "갑"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 있는 경우 그 지연 이자는 연 24%로 한다. 다만, 전항의 "갑"의 손해가 금전적으로 명백히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금 일천만원 (₩10,000,000)을 최소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제 45조 4항

<p>약정한다.</p> <p>"을"이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 해지, 중단, 종료등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중지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일금 오십만원(₩500,000) X 계약기간 잔여월수</p>	제 45조 5항
<p>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 지급 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 지급 의무 이행에 대해 전항에서 정한 지불 기일을 지연시켰을 경우 5일 경과 후부터 "을" 은 본 조 제4항의 지연이자 규정에 따라 연이율 24%의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제 45조 6항
<p>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제 45조 7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9~10쪽 참조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43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필요시 부담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29~28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7	-
가맹금 예치	- 당사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가입 하는 경우 당사에 지급함	D-26(1일)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5~23(3일)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2(1일)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2~3(20일)	-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2일)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규모에 따라 소요비용의 금액과 지불하는 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 및 점포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 맹본부 부담액 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 부터 9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여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대상 및 내용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
절차	가맹본부는 경영자문계획서(경영자문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가능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협의 및 진행 → 만약 경영활동을 자문했다면 자문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경영활동 자문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자문계획서(경영자문 가부, 경영자문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가능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관한 협의 및 진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 자문 결과를 설명	행 → 만약 경영활동을 자문했다면 자문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 자문 결과를 설명
비용부담	가맹점 부담 (통상의 가맹점관리에 포함 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지원 가능)	가맹점 부담 (통상의 가맹점관리에 포함 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지원 가능)
비고		

[상기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의 가맹점관리, 교육, 통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계약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경영지도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제도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ex:부진점포 활성화 등)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온누리꾸미]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온누리쭈꾸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소개, 점포운영, 기기사용법, 발주 및 입금, 메뉴 조리방법 및 서비스교육 등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교육 등	강의 또는 실습	가맹계약 체결 후 오픈 전까지	필수 교육
수시 교육	가맹점 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가맹점 운영사항 등	강의 또는 실습	별도통지	필수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및 운영관리 등	강의 또는 실습	별도통지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온누리쭈꾸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11일(8시간)	최초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가맹비에 포함
수시 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상이	실비	필요 시 실시
보수 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상이	실비	필요 시 실시

○ 교육이수는 세부사항에 따라서 최소시간 및 비용 등 달라지며, 내용확정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당사는 귀하가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귀하나 귀하가 채용한 직원의 교육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개점을 연기 또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인천	부평직영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77-4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0년 8개월	3,885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950,487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1670-0100 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1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2

재무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2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권장하는 상품 및 용역별 가격

(기준 : 2015년 05월 기준)



<p>셋트메뉴 (2인이상 주문가능)</p> <p>푸꾸미 셋트 (1인분) 11,000원 <small>(푸꾸미볶음+온누리샐러드+도토리전+도토리묵사발+프리미엄 원두커피)</small></p> <p>철판메뉴 (2인이상 주문가능)</p> <p>철판 푸꾸미 (1인분) 9,000원</p> <p>철판 주삼겹 (1인분) 10,000원 <small>(철판푸꾸미/철판주삼겹+샐러드+묵사발+프리미엄 원두커피) *공기밥 별도</small></p> <p>단품메뉴</p> <p>푸꾸미 볶음 <small>포장판매가능</small> 8,000원</p> <p>한우 직화 불고기 <small>포장판매가능</small> 9,000원</p> <p>크림 왕새우 <small>포장판매가능</small> 9,000원</p>	<p>추가메뉴</p> <p>치즈퐁듀 5,000원</p> <p>크림막걸리 4,000원</p> <p>도토리전 <small>포장판매가능</small> 5,000원</p> <p>도토리 묵사발 <small>포장판매가능</small> 5,000원</p> <p>온누리 샐러드 <small>포장판매가능</small> 5,000원</p> <p>철판메뉴 주문시만 가능</p> <p>우동 사리 2,000원</p> <p>떡 사리 2,000원</p> <p>볶음밥 2,000원</p> <p>날치알 볶음밥 3,000원</p> <p>공기밥 1,000원</p>
--	--

온누리푸꾸미 **매운맛**은 조절되지 않습니다.
 쇠고기 한우/돼지고기/쌀-국내산-김치(배추:국내산,고춧가루:중국산)

<가맹본부 수령분>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는 2부가 작성되어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및 비밀유지 약속서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 자료에 담겨있는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일,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여 가맹본부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서면으로 함께 제공하였고, 가맹희망자가 이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가맹희망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 번호	
사업자등록 예정자		가맹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 번호	
가맹본부 상호		영 업 표 지	
내 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10개 점포현황 (10개 미만인 경우 :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장래 점포 예정지	주소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수령 사실 확인	상기 본인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서면으로 직접 제공받았습니다.		
비밀유지 약속	상기 본인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수령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00 : 00		
수령 장소	주소		
가맹희망자 서명	성명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서명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공자 서명	부서명 및 제공자 성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위 내용 중 점포 현황 외 빈칸은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 모두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 수령분>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는 2부가 작성되어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및 비밀유지 약약서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 자료에 담겨있는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일,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여 가맹본부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서면으로 함께 제공하였고, 가맹희망자가 이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가맹희망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 번호	
사업자등록 예정자		가맹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핸드폰 번호	
가맹본부 상호		영 업 표 지	
내 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10개 점포현황 (10개 미만인 경우 :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장래 점포 예정지	주소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수령 사실 확인	상기 본인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서면으로 직접 제공받았습니다.		
비밀유지 약속	상기 본인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수령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00 : 00		
수령 장소	주소		
가맹희망자 서명	성명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서명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공자 서명	부서명 및 제공자 성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위 내용 중 점포 현황 외 빈칸은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 모두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수령확인 및 비밀유지 약속서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 자료에 담겨있는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일,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내용을 유출하여 가맹본부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하였고, 가맹희망자가 이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가맹희망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사업자등록 예정자		가맹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수령 사실 확인	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직접 제공받았습니다.		
비밀유지 약속	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 내용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수령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00 : 00		
수령 장소	주소		
가맹희망자 서명	성명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서명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공자 서명	부서명 및 제공자 성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위 내용의 빈칸은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 모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수령확인 및 비밀유지 약속서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 자료에 담겨있는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일,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내용을 유출하여 가맹본부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하였고, 가맹희망자가 이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가맹희망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사업자등록 예정자		가맹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수령 사실 확인	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직접 제공받았습니다.		
비밀유지 약속	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 내용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수령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00 : 00		
수령 장소	주소		
가맹희망자 서명	성명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서명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공자 서명	부서명 및 제공자 성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위 내용의 빈칸은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 모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